

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모집공고

전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으로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「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8월 30일

전 주 시 장

◎ 사업 개요

- 대상주택 : 전주시 공공임대주택(공급주체 : 전주시, LH, 전북개발공사)
 - * '공공임대주택 리츠'의 경우 채권 양도·양수 부분 소유자 및 위탁관리자 동의 시 지원 가능
- 사업규모 : 40가구 정도(신혼부부 24, 청년 16)
- 지원금액 : 최대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
(임대보증금 중 계약금(10%이내) 본인 부담·유지조건)
-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입주하였거나, 신규 입주 예정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
 - * '17. 1. 1.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/ 18~39세('85.1.1~'06. 12. 31.출생)로 미혼 청년
- 지원방법
 - ※ (신규 입주자) 공급주체와 입주 계약 체결 후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
 - 대상자가 공급주체(LH, 전개공 등)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, 자격 확인 후 공급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지급
 - ※ (기존 입주자) 임대계약 갱신(재계약 또는 증액계약), 채권양도를 통해 지원
 - (증액계약)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증액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공급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지급
 - (채권양도) 기 납부한 임대 보증금 중 채권 양도·양수가 가능한 범위 내 지원하며 계약자 본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직접지급
 - 지원기간은 1회, 기간은 2년으로 하며, 자녀수에 따라 최대 4회 연장 가능
 - ☞ 기본 2회 연장(최대 6년), 1자녀 가구 3회 연장(최대 8년), 2자녀이상 가구 4회 연장(최대 10년)
 - 임대보증금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 지원기간

범위 내에서 연장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해야 함.

(* 월임대로 및 관리비를 최근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함.)

※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가구, '23년 동일사업 지원가구'는 중복하여 신청 불가

※ 신청대상 등재순으로 예산 범위 내 선정 예정으로 접수기간 내 2배수 이상 접수 될 경우 신청기간 중이라도 종료 될 수 있으며 모집규모 이하로 접수 될 경우 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.

- 전산상 신청서 제출이 완료시간으로 신청대장이 작성되며 동시간대 접수 등으로 신청순위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우선순위*에 의하여 선정

* 우선순위 : (신혼부부)^①자녀수 ↑ ^②혼인기간 ↑ ^③공급면적 ↓ / (청년) 공급면적 ↓

◎ 신청 · 접수

- 신청기간 : `24. 9. 9. 10:00 ~ 9. 12.18:00(4일간) ※전주시청 누리집 접수만 가능
 - 신청대상 :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, 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 (전주시 및 LH, 전북개발공사 등)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 - 신청 및 접수: 계약자 본인이 직접 인증 후 구비서류 모두 제출 (<https://jeonju.go.kr>)
 - 제출서류 목록
 -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(융자) 신청서 1부.(붙임2 양식)
 - ②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(융자) 이행 협약서 1부.(붙임2 양식)
 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.(붙임2 양식)
 -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.(주민등록번호전부공개)
 - ⑤ 임대차 계약서 1부.
 - ⑥ 권리침해유무확인서 1부.(공급주체에서 발급)
- ※ 접수 시 구비서류를 누락 할 경우 구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접수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.

◎ 선정 및 지원

- (선정일정)
 - (신청접수) `24. 9. 9. 10:00 ~ 9. 12. 18:00까지(4일간)
 - (대상선정) `24. 9. 13. ~ 9. 30.(18일간)
 - ▶ 24. 9. 19. ~ 9. 20.(2일간) : 1차 선정자 채권 양도·양수 계약서 작성 및 추가 서류 제출(직접내방)
 - ※ 대리인은 배우자만 가능(대리인의 경우 반드시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부 및 인감도장 지참)
- (임대보증금 지원) `24. 10. 1. ~ 10. 7.(7일간)

◎ 임대보증금의 회수

-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회수
-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대보증금 회수

◎ 기타 유의사항

-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원(융자)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와 채권 양도·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양수된 채권의 권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에게 있음.
 - 임대보증금 지원 결정 후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감액하거나 해지할 경우 신청인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가 지원한 지원금 일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함.
 -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는 채권양도·양수 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.
 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모든 서명은 성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(본인의 정자 이름 기재) 하여야 하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.
- ※ 서명이나 인감을 이미지 파일 삽입하는 경우 불인정(자필작성 후 스캔하여 업로드)